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일자 : 96. 4. 6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6. 4. 8
- 다. 상정일자 : 96. 4. 29 (제44회 임시회 제6차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 병 일
- 나. 제안이유
 -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사무중 담당업무의 소관실과 변경으로 관련규정 개정
- 다. 주요내용
 - 인장업 신고 사무 : 내무과 → 민원봉사실
 - 매장, 개장 화장신고 : 가정복지과 → 사회복지과
 - 상하수도 업무 : 도시과 → 환경보호과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사무중 담당업무 소관실과 변동 및 조례에 중복 규정된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【원안가결】

7. 첨부 :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4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화순군행정기구 및 직제가 96. 1. 20자로 개정 공포되어 현 기구 및 직제에 따라 읍면 위임 조례를 개정(정비) 하려는 것임

2. 개정근거

-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공포 : 96. 1. 20 (제548호)
- 제2조 (실과의 설치)
 - 경영정책실, 민원봉사실을 신설하고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를 폐지함으로 분장 사무가 상호 이관되어 읍면 위임 사무 조정

3. 주요골자

- 내무과 소관 1건 → 민원봉사실로
- 가정복지과 소관 1건 → 사회복지과로
- 도시과 상수도업무 환경보호과 이관으로
 - 도시과 소관 18건 → 환경보호과로
- 조례 및 규정에 의거 삭제 → 3건
- 기타 신설 및 수정 → 1건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별표"를 다음 "별표"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권 한 위 임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수임기관	비 고
문 화 공 보 실	1. 공연신고 2. 향토문화재조사 및 관리	○ 공연법 제14조 2항 ○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95조 제1항	읍면 "	
민 원 봉 사 실	1. 인장업 신고사무	○ 인장업법 제3조 제1항	"	
내 무 과	1. 읍면6급이하 공무원 정기호봉승급 2. 읍면6급이하 공무원 휴직발령 3.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4. 읍면 계장 및 출장 소장 보직발령 5. 읍면8급이하 지방 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6. 이 행정지도 7. 문서보관 및 폐기 (다만 문서를 폐기 할 때에는 군수에 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) 8. 삭 제 9.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해제	○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○ 지방공무원법 제63조 ○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○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○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 (대통령령 제13390호, '91. 6. 19)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	" " " " " " "	
재 무 과	1.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2. 삭 제	○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	"	

권 한 위 임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수임기관	비 고
재 무 과	3.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	○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제95조 제1항	읍면	
	4.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사무	○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234조의 15	"	
사 회 복 지 과	1. 위생 접객업소 지도	○ 공중위생법 제21조	"	
	2. 삭 제		"	
	3. 생활보호대상자 조사	○ 생활보호법 제17조	"	
	4.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보호 금품 지급	○ 생활보호법 제9조	"	
	5. 노임소득사업 취로 대상자 선정	○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	"	
	6. 노인소득사업 (직영) 집행	○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	"	
	7. 영세민 취로사업장 지도 감독	○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	"	
	8. 매장. 개장. 화장 신고	○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5조	"	
환 경 보 호 과	1.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단속	○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 화순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제6조	"	
	2. 건축법 제9조, 제15조 제2항 제72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정화조 설치 (변경) 신고 및	○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	"	

권 한 위 임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수임기관	비 고
환 경 보 호 과	준공검사 에 관한 업무	○ 같은법 제11조 및 시 행규칙 제15조	읍면	
	3. 공공하수도 관리 (도시계획 구역 내)	○ 하수도법 제7조	"	
	4.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5조	"	
	5. 수도폐전 신청 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	"	
	6. 개인급수전 설치 허가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	"	
	7. 급수사용료의 이의 신청 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	"	
	8.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	"	
	9. 급수신고 업무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제1항	"	
	10. 급수장치 관리의 무 승계업무 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	"	
	11. 수도사용료 감액 신청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	"	
	12. 급수공사의 승인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	"	
	13. 공용급수장치의 설치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2	"	
	14. 급수공사의 시행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	"	
	15. 급수공사의 준공 검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의 2	"	
	16.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5조	"	

권 한 위 임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수임기관	비 고
환 경 보 호 과	17. 상수도 요금의 조정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	읍면	
	18.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0조	"	
	19. 정수처분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	"	
	20. 급수장치 철거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	"	
산 업 과	1. 수도묘관 공동방제업	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	"	
	2. 수도비배관리 및 지도계몽	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	"	
	3. 농약공급	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	"	
	4. 농지전용신고 수리	○ 농지법 제37조 ○ 농지법 시행령 제40조 ○ 농지전용업무 세부규정 제33조(농림수산부훈령 제841호 95. 12. 29)	" " "	
산 림 과	1. 신고에 의한(임야의) 임목 벌채	○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10호	"	
	2. 가로수 관리	○ 가로수관리규정 제14조 (산림청예규 제302호. 87. 1. 3.)	"	
	3. 입산신고	○ 산림법 제98조		

권 한 위 임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수임기관	비 고
지 역 경 제 과	1.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	○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	읍면	
건 설 과	1. 2,000만원 이하 공사시행	○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마목	"	
	2. 도로점용 허가	○ 도로법 제22조,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	"	
	3.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	○ 도로법 제22조,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	"	
	4.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	○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	"	
	5. 삭 제		"	
	6.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시설물 사후관리	○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6조	"	
도 시 과	1. 토지 출입허가	○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	"	
	2. 토지 형질변경 허가(1,000㎡이하) 및 단속조치	○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92조 제1호	"	
	3.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	○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71조 제3항	"	
	4. ~ 21 삭제		"	
	22. 연면적이 85제곱	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	"	

권 한 위 임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수임기관	비 고
도 시 과	<p>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.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)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.개축.재축 및 대수선</p> <p>23. 제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제곱미터이하의 증축.개축.재축.대수선 다만, 동 조항동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.</p> <p>24.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창고의 증축.개축.재축 및 대수선</p> <p>25. 죽목의 식재</p> <p>26. 별표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. 다만, 휴게음식점. 일반음식점. 병원. 슈퍼마켓. 금융업소 및 학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27.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</p>	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</p>	<p>읍면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 <p>"</p>	

권 한 위 입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근거 및 적용법률	수임기관	비 고
도 시 과	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천막	제7조 제3항	읍면	
보 건 소	1. 삭 제		"	
	2. 삭 제		"	
	3. 삭 제		"	
	4. 삭 제		"	
	5. 대마재배허가등	○ 대마관리법 제5조, 제7조, 제9조, 제14조	"	
	6.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지도업무	○ 전염병 예방법 제40조	"	
	7. 배정 범위안의 방역약품 유통수불 및 방역장비관리등	○ 전염병 예방법 제40조	"	

신.구조문 대비표

실과명	현행		개정안		비고
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
민원 봉사실			1. 인장업 신고사 무	○ 인장업법 제3 조 제1항	
내무과	8. 인장업 신고사 무	○ 인장업법 제 3조 제1항	3. 삭 제		
재무과	2. 수입증 지 판매 및 인 지정	○ 화순군 수입 증지 조례 제7조 및 제9조	2. 삭 제		
사 회 복지과	2. 유기장 휴업, 재개업, 폐업,신 고처리	○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	2. 삭 제		
			8. 매장, 개장, 화장신 고	○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	
환 경 보호과			3호 ~ 20 호 신설		
가 정 복지과	1. 매장, 개장, 화장신 고	○ 매장 및 묘 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	1. 삭 제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실과명	현행		개정안		비고
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
산림과	3. 입산허가	○ 산림법 제98조	3. 입산신고	○ 산림법 제98조	
건설과	5. 부동산 소유 사실 증명원	○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26조 제4항	3. 삭제		
도시과	4호 ~ 21호		4호 ~ 21호 삭제		